

2022년도 섬유제조기업 맞춤형 기술닥터 지원대상 기업 모집

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패션활성화기반마련사업의 일환으로 「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제조 현장에 다양한 유형별 애로기술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04월 11일

DYETEC연구원장

1. 사업목적

- 다이텍연구원에서는 지원에 일환으로 지역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기와 같이 “**섬유제조기업 맞춤형 기술닥터지원[오픈형 상시 애로기술 진단 및 컨설팅 지원]**”을 통한 제조 현장에 다양한 유형별 애로기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상시지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.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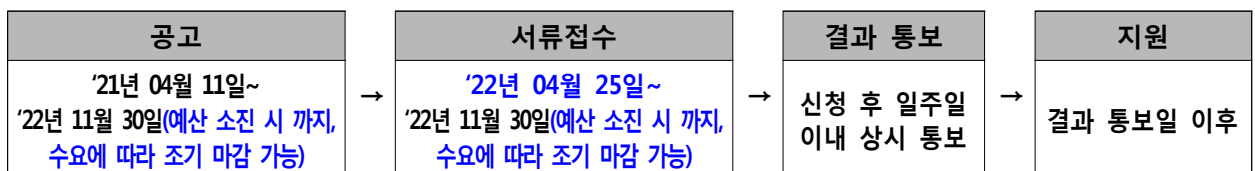
- 지원규모 : 30개사 내외(업체당 600천원 내외) ※ **신청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**
- 지원내역 : 전문가 컨설팅(상담)+분석지원(생산품질/신제품개발평가/인증사전검증)

항 목	내 용	비 고
생산품질관리	제조공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염조제 Lot 관리, 불량원인분석 지원 및 공정조건 개선을 통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- 조제분석 : 건조강량, 가성소다 농도, 과산화수소 농도, 기포성, 분산성, 아세트산 순도, 발염제/표백제 순도-하이드로설파이트계) - 기기분석 : FT-IR, SEM-EDS	조제/기기분석
신제품 개발평가	개발 시제품 물성평가 및 바이어 요구 물성 충족 방안 제시	물성평가
인증사전검증	국내외 인증/규제, 유해화학물질 사전 검증 및 개선방안 지원	KC(자율안전확인) 및 Eco-Text 시험

3. 지원자격 : 소재 제조기반/공장을 보유한 중소 섬유 기업

4. 신청절차 :

- 신청 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.
-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.(예산 소진시 까지 상시 접수 지원)



5. 신청 및 문의처

구분	접수처 및 문의처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신청서류(제안서 및 첨부서류)를 작성하여, 이메일/우편 접수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지원 신청서 총 1부 (원본 1부)[해당 서식] 2) 사업자등록증 1부 (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(계획)서 등이 허위, 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,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. 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제안서 및 관련 양식 교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DYETEC연구원 홈페이지(www.dyetec.or.kr)
신청 접수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22. 4. 25 ~ 예산 소진 시까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시 접수에 따른 접수 및 문의처에 반드시 사전 상담 요망 - 이메일 및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
접수 및 문의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DYETEC연구원 기업지원센터 윤호정 선임연구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TEL : 053) 350 - 3843 - E-mail : hojung@dyetec.or.kr - 주소 : (우 41706)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92 DYETEC연구원 C동 1층 102호 기업지원센터

※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(계획)서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,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.

6. 지원제외 대상(공고일 기준)

- 소재 제조기반/공장(제조업)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
- 2022년도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복 지원 불가
-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재 중인 경우
- 접수기간 내에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
- 접수일 기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, 화의기업, 완전자본잠식,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, 개인회생·파산·면책권자인 경우
- 신청서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.